

실학박물관 반려동물 동반 관람객 입장 지침

시행일 2025.10.15

□ 박물관 반려동물 출입 안내

- 반려동물* 동반 시에는 박물관 내부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.
단, 장애인 보조견(안내견)은 예외로 합니다. (장애인복지법 제40조 근거)
-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지 않는 특수동물(파충류 등)의 경우에도 입장이 불가합니다.
- 박물관 외부공간(다산정원 등)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 가능하나, 다른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목줄(2m이내 고정), 하네스, 케이지, 이동가방 등을 활용하여 입장하여야 합니다.

* '반려동물'의 범위 :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(개, 고양이, 토끼, 페럿, 기니피그 및 햄스터)

□ 준수(권고)사항 안내

-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맹견* 및 공격적인 성향의 동물일 경우, 박물관 관할구역 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.
- 배설물은 반려인이 직접 준비한 배변 봉투를 활용해 수거해야 하며, 처리 후에는 되가져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반려인은 반려동물의 위협적인 행동 차단 및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반려동물 동반 시, 박물관 시설(다산정원 등)이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- 반려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(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인적·물적 손해를 입힐 경우 등) 시 전적으로 반려인의 책임이며, 이에 대한 손해배상 요청이 있을 시 이행해야 합니다.
- 박물관 직원은 반려동물 임시 보호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.
- 반려동물 관련 지침 미준수 사항을 목격할 경우, 박물관 관리자 및 안내 직원은 발견 즉시 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* '맹견'의 범위 : 도사견, 핏불테리어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, 로트와일러 등 그 잡종의 개 (동물보호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 3) 그 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